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8호 2022. 5. 12.(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661호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2-696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 3
- 사천시 공고 제2022-707호 공시송달공고 ----- 7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사천시 공고 제2022-661호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우리 시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식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2일

사 천 시 장

1. 승인조건

- 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그 조건 이행후 면허 처분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수면은 양식업(어업)면허 처분할 수 없다.
-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는 그 민원 및 수산 관련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대체개발 시 합산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 완료한 후 양식장(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바. 양식장(어장)개발 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인한 후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사. 양식장(어장)개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면허 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아.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 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 자.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 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식업(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카. 정치망어업은 보호구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타. 양식업(어업)면허 처분 시에는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파. 위(가~타)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양식업(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2.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방법)	수면 위치	면적 (ha)	승인 여부	비고
총계	4건		41.94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서포 다평	8.94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18호 기간만료 재개발
		서포 비토	8.0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19호 기간만료 재개발
		서포 비토	15.0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20호 기간만료 재개발
		서포 비토	10.00	승인	패류양식 사천 제21호 기간만료 재개발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사천시 공고 제2022-69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구룡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사 천 시 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구룡천	구룡소하천 정비공사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229-2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41-1	-	312	-	2022년 5월	2022년 12월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상 1식
열람서류 1. 도시관리계획(하천:구룡소하천)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하천:구룡소하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설계도서 4.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사천 도시관리계획 [하천:구룡소하천] 결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A	구룡 소하천	하천	사남면 화전리 229-2	사남면 화전리 산41-1	-	985	9~20	13,080	-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구룡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구룡소하천) 신설 B=9~20m L=985m A=13,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현재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및 소하천예정지를 홍수시 범람 및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소하천)로 결정코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도시계획시설(하천:구룡소하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남면 화전리 1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천:구룡소하천)사업

나. 명 칭 : 구룡소하천 정비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L=312.0m , B=8.5m~15.0m (A=3,7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시행계획의 공고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 778 호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229-2	제	819	500	경상남도					
2	〃	230-1 (230)	전	200	200	강*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50				
3	〃	1606-32	천	26,723	2,690	국토 교통부					
4	〃	1606-76 (1606-16)	천	104	104	강*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60				
5	〃	124-1 (124)	전	11	11	강*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60				
6	〃	1606-79 (1606-11)	천	201	201	김*성	부산시 동구 망양로 610번길 6-2				
7	〃	128-1 (128)	전	9	9	김*률	경남 사천시 사남면 구룡길 78-1	사남농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15-2	근저당	
8	〃	129-1 (129)	대	4	4	이*례	경남 사천시 용현면 금문5길 58	고성농업 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43번길 54	근저당	
9	〃	1612	도	1,046	68	국토 교통부					
	합계			29,117	3,787						

사 천 시 공 보

제778호

사천시 공고 제2022-7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신고어업)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12. ~ 2022. 5. 25.(14일간)
3.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내수면어업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금액	납부기한	비고
성명	주소					
황*영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 41-**	2021. 4. 6. 20:20경 (사천시 곤명1로 90, 곤양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무신고 투망어업)	1,000,000원	'22. 6. 30.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055-831-3117)
5.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최고 60개월)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5. .

사 천 시 장